〈제국의 위안부〉 소송에 대한 독자 의견

요 약

○ 저자가 규정한 대로 〈제국의 위안부〉는 역사를 둘러싼 사회현상과 담론을 고찰하기 위해 저술한 '메타역사서'로, '역사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보다는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들은 '출판금지 가처분 변경신청'을 통해 "허위사실을 전파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소송의 논리를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책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의 방안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표현 중 34곳의 삭제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일부 삭제 인용은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자는 이 책에서 "당시 실정법에 의하면 '강제연행'이 아닐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구조적 강제'가 연행했다"고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2심 재판부는 "일본국과 일본군은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동원하거나 강제연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독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서술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독자의 오독 책임까지 저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가치판단'이나 '의사표명'에 해당하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역사에 대한 해석'을 다룬 '의견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1심에서는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반면에 형사2심에서는 "표현 일부가 허위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을 저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서는 결정문에서 "학문 연구는 기존 사상이나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 해도 용인해야 한다. '공적관심사가 된 역사적 사실'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예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책은 여기서 특정하고 있는 바로 그 '공적관심사가 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삭제요청 표현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누군가 명예훼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어 출판물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결론은 출판금지이거나 출판허용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물 한 문단 한 단어를 떼 내어 이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재단한다면 어떤 저자도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책에 대한 제반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이름으로 제기되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피해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원단체의 운동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저자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단체에서 소송을 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의견 작성 배경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하는 등 허위사실을 전파해 자신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이유로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이 이 책의 저자인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2014.06.17 손해배상청구 및 출판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도로만 알고 있던 중 지난해 비로소 〈제국의 위안부〉를 읽었는데, 읽으면서 보도로 알고 있던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 이슈가 된 '정의연' 문제 때문에 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때 저자가 소송 와중에 출간한 '비판에 대한 반론' 〈제국의 위안부-지식인을 말한다〉와 '소송 과정'을 정리한 〈제국의 위안부-법정에서 1460일〉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울러 저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소송 관련 자료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의 출발점이 된 〈화해를 위해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자는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양국 화해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현상을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의 일환으로 위안부 문제를 조망한 〈제국의 위안부〉를 저술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역설하는 주장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만든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서 오히려 드러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겪었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정도를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송 자료를 살펴본 결과,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주장이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민사 및 형사 재판부의 결정 또한 오해와 상호 모순의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의 독자로서, 그리고 법의 통제 아래 있는 시민으로서, 이 과정에서 갖게 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출판물의 성격

이 책이 소송의 대상이 된 만큼 이 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서와 대중서가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수 없고, 역사서냐 문학서냐에 따라 허용되는 해석의 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학술적인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저자 스스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대중에게 '역사와 마주하는 방식'을 알리기 위해 저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상정한 대중서라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계'를 독자로 하는 학술서보다는 사회적인 파장이 클 수 있겠습니다.

문학서가 아닌 건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이 책을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이

에 대해 저자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역사를 둘러싼 사회현상과 담론에 대해 고찰한 메타역사서'[1]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국의 위안부-법정에서 1460일〉에서 인용한 역사학자 헤이든 화이트[2]는 자신의 저서 '메타역사(Meta-history)'에서 "역사는 언어로 시대와 사건의 상을 전달하는 만큼 본질적으로 '수사적(rhetorical)'이고 '시적(poetic)'이며, 따라서 역사가가 역사적 사실을 전할 때 메시지나 이데올로기가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결국 '역사'라는 것 자체가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하지만 결국 해석의 학문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메타역사를 '역사철학(the study of the philosophy of history)' 또는 '역사서술방식(study of the structure of historical narrative)'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역사'에 대한 서술 중 '해석'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자 스스로도 '위안부 역사를 마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안할 생각으로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으니 '메타역사'는 '역사해석'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책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적시'보다는 '의견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사1심 및 형사2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받아들였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범죄에 상응한 벌금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 소송 진행 상황

피해자들은 저자가 '허위사실'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1) 〈제국의 위안부〉 출판을 금지하거나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2)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며, (3)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출판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일부 표현을 삭제한 삭제판이 출간된 상태이고, 피해 보상금은 각 1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저자는 각각에 대해 상급심에 항소했습니다. 형사소송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 형이 선고되었으며, 저자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입니다.

저는 이 책에 서술한 내용이 '사실인가 허위인가, 사실적시인가 의견표명인가'하는 것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다투는 문제의 출발점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이 책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고 있어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

1) 〈제국의 위안부-법정에서 1460일〉 26쪽
2) 〈제국의 위안부-법정에서 1460일〉 299쪽

4.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 민사소송

〈제국의 위안부〉 표현 중 109곳을 문제 삼아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4개월 후 이를 53곳으로 변경하고, “허위사실을 전파해 명예를 훼손했다”[3]는 당초 소송 사유를 “왜곡해 표현했다,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4]고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출판금지’ 요청을 ‘문제표현 삭제 후 출판’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34곳에 대한 삭제요청을 인용했습니다.[5]

당초 삭제요청한 표현은 전체 109곳이었으나 가처분 변경신청 과정에서 69곳을 제외하고 13곳을 새로 추가해 최종 53곳이 되었습니다. 제외한 곳은 “근거를 제시했거나, 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위안부를 오히려 차별의 대상으로 표현했거나, 지원단체의 운동방식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한 근거 없이 졸속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스스로 “허위사실을 전파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소송의 논리를 허물었는데도 재판부는 문제표현 중 일부에 대한 삭제요청을 인용했습니다. 저자로서는 패소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에 해당하고, 저술 동기는 피해자들을 직접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6]

“법적인 국가책임이나 청구권협정에 대한 서술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저자의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따라서 법원이 사전적으로 그 표현을 금지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이러한 해결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7]

재판부가 이 책의 저술의도를 제대로 읽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견해가 ‘출판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어떻게 한 결정문 안에 존재할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나. 형사소송

명예훼손은 그 출발이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이냐”, “단순 명예훼손이냐, 출판물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3) 가처분 신청서 2쪽
4) 가처분 변경신청서 4쪽, 5쪽
5)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6) 가처분 결정 17쪽
7) 가처분 결정 18쪽

면 이 책 때문일 것이니 당연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9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형법 307조)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단순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례[8]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책의 표현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형사1심 및 형사2심에서 모두 이에 해당하는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사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진술이 …이므로 그 본질이 …이었다’라고 추론하는 것을 볼 때 검사의 주장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다”[9]고 지적하면서 “저자가 서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0]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2심 재판부는 문제의 표현 35곳 중 24곳은 ‘의견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11] ‘사실적시’로 판단한 것은 11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견표명’이라는 것은 ‘허위사실’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재판부는 문제표현 대다수를 ‘의견표명’으로 판단하고도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1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적시’ 판단을 위해서는 35곳의 표현 하나하나를 살폈으면서도 형량의 결정적 요소인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뭉뚱그려 판단했습니다.

“많은 조선인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고, 애국적으로 일본군에 협력하고 함께 전쟁을 수행했으며, 일본국과 일본군은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동원하거나 강제연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독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서술되어 있다.”[12]

저자는 이 책에서 “‘강요된 자발성’에 의해 위안부가 되었고, 당시 실정법에 의하면 ‘강제연행’이 아닐 수 있으나 이는 제국에 ‘구조적인 책임’이 있다”고 누누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고 서술하지 않으며, ‘제국’이라는 ‘구조적 강제’가 위안부를 실질적으로 연행했다고 일관되게 서술합니다. 저자가 그렇게 서술하고, 그렇게 서술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저 또한 그렇게 읽은 것으로 미루어) 그것이 객관적 사실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독자의 오독 책임을 저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들이 가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스스로 ‘허위사실’이라는 표현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도 형사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건이기는 합니다.

---

8) 대법원 1998.10.09 선고 97도158 판결
9) 형사1심 판결 8쪽
10) 형사1심 판결 4쪽
11) 〈표〉 ‘검사 주장에 대한 사실적시/의견표명 판단 비교’
12) 형사2심 판결 37쪽

5. ‘명예훼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면 최종적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며, 이러한 위협이 강력한 위축효과를 발휘해 표현의 자유나 학문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자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저자가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했을 뿐 아니라 출판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기소내용과 형사1심과 형사2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1)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2)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3) 명예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고발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가치판단’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상반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1심 재판부는 “(1) 표현 내용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 떼 내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13] (2) 표현 내용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도 비판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명예훼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14] (3) ‘사실적시’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앞뒤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이거나 상상적이고, 일반적으로 핵심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그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니고 ‘의견표명’이다[15]”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2심 재판부는 문제표현 일부를 ‘의견표명’이 아닌 ‘허위사실적시’로 판단[16]한 후 “(1)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성립한다,[17] (2) 그 표현이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타인이 이를 알기 어려우므로 사실의 출처와 인지 경위를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18]”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2심 재판부에서 문제의 표현 35곳 중 24곳은 ‘의

13)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6다45275 판결
14)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5) 대법원 2004.02.26 선고 99도5190 판결
16) 형사2심 판결 37쪽
17) 대법원 1991.03.27 선고 91도156판결
18)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견표명'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사안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니, 일반 시민으로서 법과 그 법에 따른 결정을 이해하는 일은 참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 '출판물 표현 삭제' 결정에 대해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학문 연구는 기존 사상이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노력이므로,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이나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 해도 용인해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보호라는 법익과 학문의 자유 보장이라는 법익이 충돌할 경우, 학문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명예보호로 얻어지는 가치를 비교해 규제의 폭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공적관심사가 된 역사적 사실'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 못지않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 역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19]

이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옹호하는 판례입니다. 이 책은 위 판례에서 특정하고 있는 바로 그 '공적관심사가 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판례를 인용한 재판부'에서는 이 책의 '일부 표현을 삭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40년째 보고서 쓰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출판물 표현삭제' 결정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고서라는 것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보고서 표현 일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받은 경우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서이므로 이런 보고서보다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학문 연구는 기존의 사상이나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 해도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히고, 명예보호라는 가치를 훼손했다"는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불편하게 여길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된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위와 같은 판례를 스스로 인용했음에도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요청한 표현의 '일부삭제'를 인용한 점입니다. 누군가 명예훼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어 출판

19)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19038 판결

물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결론은 출판금지이거나 출판허용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물 한 문단 한 단어를 떼 내어 이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재단한다면 어떤 저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작가가 이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다음과 같은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20]

또한 앞서 인용한 "표현 내용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도 비판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명예훼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21]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명예훼손과는 무관한 보고서를 쓰는 걸 생업으로 삼고 있기는 합니다만, 책의 저술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삭제 결정을 내린 판결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는 '출판금지'보다 '일부삭제'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더 압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소송의 주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들 중 누군가 이 책을 읽고 모욕을 느껴 분개하셨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 같은 마음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께 알려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소송으로 이어가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누군가가 먼저 소송을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서 제소하지 않았으면 좋았기는 했겠습니다. 그렇다고 위안부 할머니 스스로가 되었든 주변에서 제안을 한 것이든 제소한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들은 모두 '나눔의 집'에 거주하셨고, 그곳 관계자가 할머니들이 고령으로 책을 읽을 수 없어 일부분을 발췌해 반복해서 읽어드렸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22]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출판금지 외에 저자가 피해자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자가 피소되기 전에 할머니들을 만나고 지원단체의 운동방식을 비판한 점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데는 지원단체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원단체 의도에 맞추어 '왜곡된 책읽기'를 했다고 추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고소인에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23] 이 책의 표현을 문제 삼아 삭제 요청목록을 작성한 한양대 리걸클리닉 지도교수이면서 책을 검토하고 고발자료를 만든 변호사가 '나눔의 집' 고문 변호사

20)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19038 판결
21)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5다65494 판결
22) 〈제국의 위안부-법정에서 1460일〉 247쪽
23) 〈제국의 위안부-법정에서 1460일〉 249쪽

라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24]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책과 관련한 일련의 소송은 피해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원단체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단체의 운동방식에 비판적인 저자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8. 맺는 말

이 책과 관련한 소송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독자로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표현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그럴만한 표현이나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자의 표현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난해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책을 택해서 읽기로 마음먹은 독자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독자가 오해할 부분이 없다 해도 피해자들이 불편하게 여겼다면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판금지 가처분 재판부가 결정문[25]에서 언급한 것처럼, (1) 저술 동기가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고, (2) 이에 대해서는 표현을 금지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해소해야 하며, (3) 우리 시민의식은 이를 수용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판물의 일부삭제란 모든 형태의 글을 쓰는 저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40년을 글쓰기를 생업으로 삼고 살아온 제게 이 결정은 손해배상이나 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대중서와 거리가 먼 글쓰기를 하는 저도 그럴진대 대중서 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는 다른 어떤 제재보다 표현의 자유를 크게 압박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출판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 항소한 상급심에서, 또한 명예훼손으로 상고한 대법원에서 이 모든 문제점과 판결 상호간의 모순을 깊이 살펴 저자의 진의가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발점이 된 〈화해를 위해서〉로부터 강조해온 저자의 주장이 학술적 사회적으로 논의되어 한일 양국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명; 박인식 (550422-1******)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41 다길 48-9
전화; 010-5281-5483

24) 〈제국의 위안부-법정에서 1460일〉 173쪽
25) 가처분 결정 17쪽, 18쪽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1	19쪽 8줄	센다는 '위안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센다는 '위안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센다는 '위안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2	19쪽 11줄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3	23쪽 2줄	그 업자는 군인의 의뢰를 받고 위안부들을 모았다고 말한다.	제외	
4	25쪽 3줄	증언자의 대다수가 이런 식의 유혹을 받고 집을 떠났다.	제외	
5	31쪽 19줄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었지만, 외국에서 서러운 음지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는 그 역할은 자신에 대한 긍지가 되어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수 있다.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었지만, 외국에서 서러운 음지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는 그 역할은 자신에 대한 긍지가 되어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수 있다.	
6	31쪽 21줄	"싱가포르 근처에는 거의 6000명의 가라유키상이 있었고 1년에 1000달러를 벌었는데, 그 돈을 일본인들이 빌려 상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해외의 가라유키상들이 일본 국가의 국민으로 당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외	
7	32쪽 3줄	없음	'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8	33쪽 7줄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없음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생기게 된 것은 이들의 위치를 조선인 여성들이 대체한 결과였다.	
9	37쪽 19줄	말하자면 아시아 각지에 존재했던 매춘시설이 모두 '일본군 위안소'였던 것은 아니다. 여러 종류의 '공창'과 '사창'이 존재했고, '일본군'이 관리하고 공식적으로 병사들이 이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군이 허가한 '공창' 뿐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중국 등 전쟁을 한 점령지에는 여성에 대한 '강간'도 많았지만, 이런 식의 '공창'에 있던 여성들도 있었다. 그렇게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여성들을 똑같이 '위안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제외	
10	38쪽 4줄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
11	38쪽 18줄	없음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12	48쪽 2줄	'정신대' 동원과 '위안부' 동원의 풍경은, 예외로 보이는 증언을 제외한다면 (제외하는 이유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확연히 다르다.	제외	
13	55쪽 목차	1.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 – 지옥 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14	57쪽 6줄	'주둔부대의 일원'이자 '부인 같은 느낌'이었다는 위안부들. 사실은 이것이 조선인 위안부에게 요구된 역할이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군대에 투입되어, 회사에서 일하는 남성을 여성이 집에서 일하며 다시 회사에 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거기에 필요한 갖가지 보조 작업을 하도록 동원된 것이 위안부였다. 그런 의미에서도 전쟁터에서의 강간의 대상이 된 '적의 여자'와 위안부는 군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다. 위안부들이 군인들과 휴일의 '평화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둔부대의 일원'이자 '부인 같은 느낌'이었다는 위안부들. 사실은 이것이 조선인 위안부에게 요구된 역할이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군대에 투입되어, 회사에서 일하는 남성을 여성이 집에서 일하며 다시 회사에 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거기에 필요한 갖가지 보조 작업을 하도록 동원된 것이 위안부였다. 그런 의미에서도 전쟁터에서의 강간의 대상이 된 '적의 여자'와 위안부는 군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다. 위안부들이 군인들과 휴일의 '평화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15	58쪽 3줄	없음	조선인 위안부가 한 일은 성적 욕구를 받아주는 일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간호도 붕대 감기도 배웠고 심지어는 총쏘기(총조립?)까지 배워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지탱했다. 전쟁에 나갔다 오면 기모노에 에프론 차림으로 맞아들이고 축하연에 참석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16	59쪽 12줄	자원한 '위안부'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이 군인의 '위안' - '나라를 위해'일하는 것이라는 것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몸'이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해야할 만큼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온 그녀들에게는, 군인을 상대하는 '위안부'란 처음으로 자신의 앉을 자리를 '양지'에 내받은 일이기도 했다.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17	61쪽 18줄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18	62쪽 12줄	"응모했을 때로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응모했을 때로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응모했을 때로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19	64쪽 8줄	이 소설은 '위안부'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동할 수도 있었다는 것, 이동은 군인이 맡았다는 것, 군은 이들을 군부대가 주둔하는 '같은 시' 다른 지역에 있는 '여관'이라 이름 붙은 위안소로 이동시켜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20	65쪽 11줄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많은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많은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많은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21	65쪽 17줄	없음	"(우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옷 벗기고 그러지 않지"(〈강제5〉 133쪽)라는 말에서처럼, 중국인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게는 명확히 다른 존재였다.	
22	66쪽 9줄	이렇게 말하는 위안부는, "자꾸 배신감이 들어"라면서도 "지금도 이 사람이 안 잊혀져"라고 말한다.	제외	
23	67쪽 12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삐렀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봐"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삐렀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봐"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삐렀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봐"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24	68쪽 2줄	말하자면 그녀들이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버리는 것은 그녀들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다. '문제'삼을 것으로 여겨진 '사회'의 억압이다. 그건 그녀의 기억들이 '피해자로서의 조선'에 균열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는 무의식적 양해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안소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기억들을 무화시키고 망각시키는 것은 그녀들에게 또 하나의 폭력이 아니었을까.	제외	
25	68쪽 13줄	"나쁜 군인은 말도 못 하게 나쁘지만 좋은 군인은 같이 울기도 하고 자기들도 천황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는 증언이야말로 위안소의 실태에 가장 가까운 것이리라. 그런데도 이 20년 동안 "어떤 군인은 달려들지 않고 젖통만 만지다가 가는 애들도 있었다"는 기억은 그저 묻혀 있어야 했다.	제외	
26	72쪽 14줄	앞서의 센다는 일본군이 위안부들의 권태감을 풀어주기 위해 부대가 주관해서 운동회를 열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위안부들이 운동회를 몹시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중략) '위안부'들의 순수한 기쁨의 기억을 외부자들이 소거할 권리는 없다.	제외	
27	73쪽 8줄	그러나 그런 일이 불가능했던 전쟁터에서 위안부는 대리고향이자 가족이었다. 그런 특공대의 마음을 받아주고 동정하는 역할을 맡은 것도 위안부들이었다. 그러나 피해기억만을 필요로 하는 한 "참 안됐다"고 말하는 연민의 기억은 잊혀질 수밖에 없다.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28	74쪽 9줄	그렇다고 해서 “장교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일본 여자하고 조선 여자”이고 “현지 여자는 주로 병정들이 상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114쪽)한다는 식으로 계급화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가장 하위에 놓여 성과 생명을 국가에 바쳐야 했던 식민지의 ‘여성’과 병사들이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제외	
29	75쪽 6줄	여기에는 속아서 왔다면서도 “군인들이 총알 맞는 것”과 위안부가 된 것“을 그저 운이 나빴다는 식으로 간주하고 군인을 원망하지 않는 위안부가 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미 식민지가 된 지 오래인 땅에서 자라나 자신을 ‘일본’의 일원으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성은 어디까지나 동족으로서의 ‘군인’일 뿐 적국으로서의 ‘일본군’이 아니다. 그녀가 일본군을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불행한 ‘운’을 가진 ‘피해자’로 보면서 공감과 연민을 표할 수 있는 것도 그녀에게 그런 동지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외	
30	76쪽 1줄	혹독한 체험을 한 이들에게도 ‘즐거웠던’ 순간은 없지 않았고, 군인에게 신세타령을 하면서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위안부’도 없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에 의해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지로 이동해야 했던 ‘개미’ 같은 처지임을 서로 민감하게 감지한 고독한 남녀이기도 했다.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31	77쪽 17줄	군인들과 위안부들이 어울려 말이나 자동차에 타고는 '어린애들마냥' 놀았던 체험을 이 할머니는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한다.	제외	
32	79쪽 9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양쪽 다, 국민동원이라는 국가 시스템 속에서 함께 움직여진 장기 말이었다. 그들은 둘 다 성과 생명을, 그것을 담는 신체를 '국가를 위해' 바쳐야 했던 한 마리 '개미'들이었다. (중략) 그들은 함께 국가에 의해 고향을 멀리 떠나 타지로 '이동'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제외	
33	95쪽 9줄	그녀에게는 위안부 체험보다도 귀환 체험이 더 잊고 싶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제외	
34	98쪽 1줄	중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인들에게는 '적'의 관계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중엔 스스로가 위안소를 경영하는 업자가 된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일본의 패전이란 우선 그동안의 자신의 위치와 재산을 잃는 일이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었어도 '간호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일본군과 함께 쉽게 빠져나온 경우도 있었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못한 것은 일본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돈을 벌었던 경우에도 이들은 모든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건 그들이 일본의 점령지에 나가 있었던 결과로 일본과 함께 현지에서 쫓겨 달아나야 했던 '준일본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안부의 가난'은 업주들에게 노예 같은 착취를 당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중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인들에게는 '적'의 관계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중엔 스스로가 위안소를 경영하는 업자가 된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일본의 패전이란 우선 그동안의 자신의 위치와 재산을 잃는 일이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었어도 '간호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일본군과 함께 쉽게 빠져나온 경우도 있었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못한 것은 일본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돈을 벌었던 경우에도 이들은 모든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건 그들이 일본의 점령지에 나가 있었던 결과로 일본과 함께 현지에서 쫓겨 달아나야 했던 '준일본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안부의 가난'은 업주들에게 노예 같은 착취를 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으로는 '일본의 패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식민지나 점령지에 나가 있었던 일본인과 조선인 등 '일본 제국'의 구성원들은 갑작스러운 일본의 패전을 맞아 대부분 몸만 빠져나와야 했고, 돌아온 각각의 '조국'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일본인, 대만인과 함께) '조선인 위안부'가 중국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다.	으로는 '일본의 패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식민지나 점령지에 나가 있었던 일본인과 조선인 등 '일본 제국'의 구성원들은 갑작스러운 일본의 패전을 맞아 대부분 몸만 빠져나와야 했고, 돌아온 각각의 '조국'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일본인, 대만인과 함께) '조선인 위안부'가 중국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다.	
35	99쪽 5줄	버마의 양곤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버마의 양곤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버마의 양곤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36	101쪽 21줄	어쩌면 그들의 '죽음'은 '일본인'에게만 허용된 의무이자 긍지의 표현이었을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확인되는 한 일본군이 패전 직후 조선인 위안부를 무조건 사살했다는 이야기를 보편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신을 '일본인'으로 믿었던 일부 조선인이 일본군처럼 자결을 택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안부의 죽음'으로 알려진 사진은 폭격에 의한 것이거나 '일본인 위안부'일 가능성이 높다.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37	102쪽 14줄	전쟁터의 극한상황에서 군인이 조선인 위안부를 버리고 갔다 해도, 그 또한 대상이 '조선인'이어서라기보다는 나부터 살아야한다는 '에고이즘'이거나 '위안부'집단보다는 '군인' 집단을 더 우위에 둔 차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제외	
38	103쪽 20줄	실제로 위안부들이 얼마나 귀환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난 이들의 숫자가 적은 것은 우리 앞에 나타나야 할 만큼 피해가 컸던 이들인 게 아닐까. 다들 이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신은 어렸다는 이야기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외	
39	104쪽 5줄	아마도 지금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들이 아닐까.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일본군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다 생명을 잃은 이들 – 말없는 그녀들의 목소리에. 일본이 사죄해야 하는 대상도 어쩌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들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언어와 이름을 잃은 채로 성과 생명을 '국가를 위해'바쳐야 했던 조선의 여성들, '제국의 위안부'들에게.	제외	
40	111쪽 15줄	'조선인 여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반도 출신 일본 여성-제국 치하 국민의 자격으로 군인에 대한 성의 제공을 요구당한 존재였다.	'조선인 여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반도 출신 일본 여성-제국 치하 국민의 자격으로 군인에 대한 성의 제공을 요구당한 존재였다.	
41	111쪽 18줄	위안부에 '조선 여성'이 많았던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선은 '조선'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위안부에 '조선 여성'이 많았던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선은 '조선'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42	112쪽 1줄	예외는 있었겠지만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그녀들이 일본 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갖고 일본군을 상대했다는 사실은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인 위안부'를 대체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외	
43	112쪽 15줄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 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될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 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될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 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44	112쪽 21줄	위안부 중에 조선인 여성이 많았던 것은 식민지의 빈곤과 인신매매조직의 활성화 등 전체 사회구조의 결과이다.	위안부 중에 조선인 여성이 많았던 것은 식민지의 빈곤과 인신매매조직의 활성화 등 전체 사회구조의 결과이다.	
45	113쪽 2줄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위안부들은 폭격으로 사망한 이들이 오히려 소수이고 대부분은 귀국했거나 현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중에 일본군의 도움으로 귀국한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도 정대협의 설명은 말하지 않는다.	제외	
46	115쪽 11줄	하지만 정신대를 위안부로 혼동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것처럼, 정대협은 위안부에 대한 이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바꾸거나 전시내용을 조금 바꾸었을 뿐이다.	제외	
47	116쪽 15줄	예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포주들은 위안부들의 수입의 대부분을 갈취했고, 일하기 싫거나 아플 때도 성 노동을 강요했다.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48	118쪽 15줄	미봉책'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박물관'인 이상 미봉책의 내용이나 상당수의 위안부들이 보상금을 받았다고 사실도 말해야 옳다.	제외	
49	120쪽 19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50	121쪽 6줄	돌아오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돌아왔다고'고 한다면, 그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함과는 조금은 다른 상황으로 자신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돌아오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돌아왔다고'고 한다면, 그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함과는 조금은 다른 상황으로 자신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51	121쪽 21줄	거의 10년 전 일이지만, 위안부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혼자 나와 사는 '위안부'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개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는데, 나눔의 집이 싫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착오로 일본 군인과 헤어지게 된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외	
52	128쪽 2줄	우선 그녀는 자신이 '좋은 집안'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53	129쪽 4줄	그리고 소녀를 보낸 직접적인 주체가 마을 사람-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는 하지만, 증언에 나오는 이야기-소녀가 '자청'했다는 사실은 사용되지 않는다.	제외	
54	130쪽 17줄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5	130쪽 21줄	물론 이 위안부가 해방 후에 '밀수'로 생활을 했다는 것도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야기 되지 않는다.	제외	
56	131쪽 4줄	2012년에 '위안부'대신 '성노예'라는 단어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당사자들이 거부한 이유는 성노예를 자신의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외	
57	134쪽 13줄	그러나 70세가 되어가도록 그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없다면, 그건 과거의 상처가 깊어서라기보다는 상처를 직시하고 넘어서는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제외	
58	137쪽 3줄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59	137쪽 6줄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60	138쪽 6줄	그녀들은 전시에 이미 간호부로 일하고 있었다.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61	140쪽 2줄	다시 말해 '위안부'제도는 근대 이후의 정치적인 면이 아니라 근세 이후 일본의 문화적 전통과 근대 이후의 여성들의 생계형 '이동'에서 그 원인을 찾았어야 했다.	제외	
62	145쪽 14줄	'위안부'들은 이렇게 '무상'노동도 강요당했다.	제외	
63	158쪽 7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64	160쪽 10줄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
65	160쪽 18줄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긍지-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긍지-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긍지-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66	173쪽 18줄	그리고 '매일 3-4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수십 명'과는 많이 다르다.	제외	
67	175쪽	고노 담화에 대한 해석 부분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68	178쪽 6줄	'정부'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금'이었다. 다시 말해 '기금'은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제외	
69	184쪽 11줄	그런데, 같은 광고에서 재일교포 송신도 할머니는 "위로금(見舞金)을 받으면 주위 일본 사람들이 경멸한다"고 말한다. - 이하 송신도 할머니의 발언에 대한 저자의 의견	제외	
70	184쪽 22줄	그들이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실은 '사죄와 보상'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1965년의 한일협정을 통해 '법적 책임'은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제외	
71	190쪽 5줄	없음	한 개인으로서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한 개인으로서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72	191쪽 8줄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 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 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 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은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 (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 (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73	205쪽 16줄	없음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74	206쪽 8줄	없음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중략)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렵혀진 식민지의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중략) 그러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중략)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렵혀진 식민지의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중략) 그러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75	207쪽 3줄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 다녀야 했던 노예임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 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제외	
76	207쪽 10줄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77	208쪽 1줄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78	215쪽 21줄	없음	그러나 일본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사죄를 제안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이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이어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사죄를 제안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이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이어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79	217쪽 9줄	시스템이 비인륜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그것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외	
80	217쪽 14줄	다시 말해 국가로서의 발상과 기획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위안부의 고통이 물리적으로는 업주나 군인에 의한 것인 이상 군인들의 이용을 국가범죄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81	218쪽 10줄	없음	그것은 위안부를 필요로 한 군이 위안부 모집을 조선이나 대만 총독부 등에 부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중략) 사기나 속임수를 써가며 모집하는 일까지 일본군의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군의 수요를 알게 된 업자들이 사기나 속임수까지 써서 모집했던 것이 대부분이었고 일본군은 그런 상황을 묵인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단속했다. 그리고 단속한 이상 단속 쪽이 일본군의 인신매매에 대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위안부들이 가혹한 노동을 하게 된 것은 분명 일본군이 그런 시스템을 허용하고 묵인하고 이용했기 때문이지만, 그에 따른 처벌을 일본군에게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한 위안소 이용이 국가범죄가 될 수는 없다.	
82	219쪽 16줄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은 전리품이었다.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은 전리품이었다.	
83	232쪽 6줄	서글픈 사실이지만, 그 조약이 양국 합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한, 그 조약에 의거해 이루어진 법적으로 일본인이 되어야 했던 조선인으로서의 피해는 보상의 근거가 없다는 말이 된다.	제외	
84	246쪽 1줄	그런데 증언 가운데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북한 여성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우연일까.	제외	
85	246쪽 7줄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86	247쪽 14줄	없음	그러나 당시 위법사항이 인신매매뿐이던 이상 위안소 설치와 이용을 '일본국의 범죄'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군이 한 일을 범죄시 하려면 오히려 개인적인 강간이나 폭행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87	254쪽 23줄	없음	게다가 동원이 인신매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군이 알고도 지시한 것이 아닌 한 설사 방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묵인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강제연행이나 인신매매의 주체를 일본군으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88	263쪽 3줄	또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한일합방이 일본의 국민이 되겠다고 한 약속이었던 이상 '위안부'동원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제외	
89	265쪽 2줄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90	265쪽 19줄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91	272쪽 22줄	없음	한국의 위안부들이 기금을 위로금으로 받아들이고 반발한 이유는 과거에 받았던 차별 경험과 기억 때문이다. 식민지의 위안부들은 자신들이 그 곳에 있게 된 이유가 가난한 여성이었기 때문이었고 그 가난이 피지배민족이라는 계급성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모욕당하는 일을 경계했고 그 결과로 반발과 저항이 강했던 것이다.	
92	288쪽 5줄	가난한 자원병들은 처음부터 신체 자체, 생명 자체를 국가에 저당 잡힌 존재들이기도 하다.	제외	
93	288쪽 12줄	일본의 패전 직후나 한국전쟁 때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제외	
94	291쪽 6줄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95	291쪽 10줄	(업자나 위안부 자신이 선택했을 수도 있다.)	제외	
96	291쪽 11줄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가 전체 위안부의 '대부분'이라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제외	
97	291쪽 23줄	군이나 경관에 의한 '강제연행'은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오히려 극소수이다.	제외	
98	292쪽 2줄	이들은 본인이 하지 않았어도 중간업자에 의해 이미 포주와의 계약관계에 있었고, 그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당했다.	제외	
99	294쪽 5줄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 군인'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 군인'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 군인'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100	294쪽 16줄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01	294쪽 22줄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102	295쪽 7줄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이 직접 '강제적 끌어간' 존재이고 그들을 '감금'한 것도 일본군이고 모든 군인은 포악하고 모든 위안부는 '순진한 어린 소녀'로만 간주하는 일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안부(이른바 '매춘부'를 포함)들을 배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제외	
103	295쪽 10줄	그것은 우리의 피해자성을 희석시키고 싶지 않은 피해자로서의 욕망이 시키는 일이지만, 표면적 모습이 '완벽한 피해자'로 보이지 않다 해도 그들 역시 피해자이고 희생자였다.	제외	
104	296쪽 19줄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105	296쪽 22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던 그 시간들은 '한국인 위안부'와 다른 나라 '위안부'와의 차이를 소거해버린 시간이기도 했다.	제외	
106	298쪽 5줄	문제는 네덜란드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 역시 '적'의 관계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네덜란드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 역시 '적'의 관계였다는 점이다.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107	300쪽 18줄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정대협의 운동은 '여성의 인권 문제'를 기치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제외	
108	301쪽 4줄	그것은 일본의 진보가 꿈꾸었던 '일본 사회의 개혁'과 통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정대협의 운동도 '위안부 문제 해결' 보다 '진보'가 세상을 바꾸는 정치적인 문제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외	
109	301쪽 22줄	정대협의 북한과의 연대는 '민족'으로서의 연대라기보다는 실은 '좌파'로서의 연대였다.	제외	
110	306쪽 10줄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토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토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토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111	306쪽 20줄	그녀들은 '이동'에 의해 경제력을 갖춘 주체로 재 주체화했다.	제외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112	307쪽 14줄	“낭자군에 기생하는 행태로 일본인의 상업 활동이 형성되어 발전을 이루었고” 그중에서도 ‘기모노집, 일상잡화집, 여관업, 의사, 그리고 사진업, 세탁소 등, 모두 낭자군의 번영에 기생하는 형태로 발생한’ (야노 도루, 43쪽)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상권이 머지않아 타국의 토지와 제도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제국주의였다는 점에서, 낭자군들은 무의식적인 제국주의자들이기도 했다.	제외	
113	308쪽 17줄	최근 들어 그 중에는 전부가 조선인은 아니었다는 인식도 내놓고 있지만, 정대협이 인식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말하고 수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제외	
114	308쪽 19줄	2013년 1월에 이루어진 뉴욕 주 상원 결의는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제외	
115	310쪽 3줄	정대협은 ‘아시아’의 ‘위안소’가 똑같이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간’ 곳으로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겠지만, 당시에 싱가포르에 가 있었던 조선인 여성은 ‘일본제국’의 일원이었다. 태평양전쟁 때의 조선인이란 ‘일본인’이고 자국을 침략한 적국의 여성일 뿐이었다.	정대협은 ‘아시아’의 ‘위안소’가 똑같이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간’ 곳으로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겠지만, 당시에 싱가포르에 가 있었던 조선인 여성은 ‘일본제국’의 일원이었다. 태평양전쟁 때의 조선인이란 ‘일본인’이고 자국을 침략한 적국의 여성일 뿐이었다.	
116	310쪽 16줄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본인 위안부들에게 차별을 당했지만, 냄새난다는 이유로 대만인을 싫어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본인 위안부들에게 차별을 당했지만, 냄새난다는 이유로 대만인을 싫어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표〉 가처분신청 삭제 요청 표현 목록 비교

번호	위치	당초 삭제 요청 (2014.06.17)	변경 삭제 요청 (2014.10.15)	인용 결과 (2015.02.17)
117	310쪽 22줄	'위안부'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하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한국이 바라는 방식으로 '기림'을 받기에는 모순이 없지 않은 존재다.	'위안부'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하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한국이 바라는 방식으로 '기림'을 받기에는 모순이 없지 않은 존재다.	
118	311쪽 4줄	한국의 욕망이 투영된 '피해자이자 투사'로서의 '민족의 딸'을 보는 일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적의 여자'이기도 했던 일을 잊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의 욕망이 투영된 '피해자이자 투사'로서의 '민족의 딸'을 보는 일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적의 여자'이기도 했던 일을 잊는 일이기도 하다.	
119	312쪽 7줄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인 위안부도 많다.	제외	
120	319쪽 17줄	그러나 위안부 지원 (위안부들은 정부의 '인정급'과 생활지원을 받고 있어서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한다), 박물관 건립 등 그동안 이어져 온 '모금'과 '기부'운동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제외	
121	320쪽 2줄	정대협의 '운동'을 거대한 '국가적 소모'라고까지 느끼는 내 감성을 그저 '친일파'로 간주하려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외	

〈표〉 검사 주장에 대한 사실적시/의견표명 판단 비교

제1주장;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다.”

순번	위치	내 용	1심 판결	2심 판결
2	32쪽	‘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3	33쪽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4	38쪽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11	112쪽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의견표명	사실적시
12	120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15	144쪽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센삐’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27	246쪽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의견표명	사실적시
30	291쪽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의견표명	사실적시

〈표〉 검사 주장에 대한 사실적시/의견표명 판단 비교

제2주장;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순번	위치	내 용	1심 판결	2심 판결
1	19쪽	센다는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6	61쪽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7	62쪽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의견표명	사실적시
8	65쪽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9	67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삐렀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봐”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10	99쪽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의견표명	사실적시

〈표〉 검사 주장에 대한 사실적시/의견표명 판단 비교

순번	위치	내 용	1심 판결	2심 판결
13	130쪽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14	137쪽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19	190쪽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했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21	205쪽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22	206쪽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23	206쪽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 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의견표명	사실적시
24	207쪽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25	208쪽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28	265쪽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 동지적 관계였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표〉 검사 주장에 대한 사실적시/의견표명 판단 비교

순번	위치	내 용	1심 판결	2심 판결
29	265쪽	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가 '전쟁'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31	294쪽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32	294쪽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33	294쪽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35	306쪽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표〉 검사 주장에 대한 사실적시/의견표명 판단 비교

제3주장;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 없었다.”

순번	위치	내 용	1심 판결	2심 판결
5	38쪽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적시	사실적시
16	158쪽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사실적시	사실적시
17	160쪽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 〈화해를 위해서〉	의견표명	의견표명
18	160쪽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긍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 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20	191쪽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	사실적시
26	215쪽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사실적시	사실적시
34	296쪽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적시	사실적시